



내년 4월부터 본격 확대 시행

가공품 및 농산물 원산지표시 A to Z

내년 4월 1일부터 가공품 및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훨씬 자세해진다. 제과점의 경우 원래 식빵에만 해당됐던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일반 빵, 도넛, 캔디류, 초콜릿 등으로 확대되고 표시 내용도 많아지는 탓에 제품포장과 이름표 재정비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_최재연 기자 · 사진_주현진, 전문식 · 촬영협조_가또마들렌 동국대점

제과점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가 내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농림부는 “구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3월 29일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제과점에서는 지금까지 식빵에만 표시했던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일반 빵, 도넛, 양갱을 포함한 캔디류, 초콜릿 등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원래는 가공품을 다시 가공한 경우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바뀐 고시대로 라면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배합비율이 50%가 넘는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하고 50%가 넘는 원료가 없을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와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또 ‘깨찰빵’ 처럼 특정한 재료의 이름으로 제품의 이름을 붙였을 경우 해당 재료의 배합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다시 말해 깨찰빵에 깨가 2% 밖에 배합되지 않더라도 제품의 이름에 쓰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물과 식품첨가물, 설탕을 포함한 당류와 소금 등의 식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 국산원료의 경우 그냥 ‘국산’으로만 표시해도 되고, 정확한 시·도·군·구 이름을 표시해도 된다. 수입 원료는 ‘중국’ ‘미국’ ‘호주’ 등

의 나라이름만 표시하지만 ‘깨찰빵’의 ‘깨’ 처럼 제품이름에 표시된 원료의 경우 나라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시한다. 미국산 밀가루와 호주산 밀가루를 섞어 빵을 만들었을 때처럼 원산지는 다르지만 ‘밀가루’라는 한 가지 원료를 나타내야 할 때는 들어간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와 각각의 비율을 표시하면 된다.

원료의 수입 원산지가 최근 3년 안에 3개 나라 이상 바뀌거나 최근 1년 동안 3개 나라 이상 바뀌는 등 원료의 수급 사정에 따라 원산지가 어쩔 수 없이 자주 바뀌거나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원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의 길포장마다 원산지를 인쇄해야 하는 양산 빵·과자업체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탓에 갑작스러운 원산지 변경이 잦아 겪어야 하는 불편과 생산차질 요인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산지 표시기준 가운데 일부를 개선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표기할 때 글자 크기를 포장 면적에 따라 8포인트와 12포인트 두 가지로 나뉘던 기존 방법을 좀 더 잘게 나눠 포장면적이 3,000cm² 이상일 경우 20포인트, 50cm² 이상일 경우 12포인트, 50cm² 미만은 8포인트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도는 하나씩 포장해서 판매하는 제품에만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의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인쇄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구입낸 빵을 한꺼번에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일반 제과점의 경우 제품의 이름표나 안내 표시판에 일괄적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는 내년 4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사)대한제과협회와 농림부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찾아낸 권장(안)으로서 영세한 자영제과점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과점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Advice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는 영양성분표시제도와 다른 제도이며 일반 자영제과점의 경우 영양성분표시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원산지표시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이름과 원산지를 쓰고, 50%가 넘는 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표시하는 제도다. 물과 식품첨가물, 설탕을 포함한 당류와 소금 등의 식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바뀐 제도는 포장해서 판매하는 제품에만 한정돼 있긴 하지만 앞으로 포장되지 않는 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제과점의 경우 즉석 빵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름표나 안내표시판을 활용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5cm, 높이 5cm 이상이 돼야하며, 원산지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한다.

사용된 원료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

배합비율이 절반이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배합비가 **강력분 58%**, 물 34%, 이스트 1.5%인 바게트의 경우 표시 대상은 비율이 50% 이상인 강력분이다.

같은 강력분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밀가루를 섞어 빵을 만들었다면 들어간 비율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와 비율을 표시한다.

표시 방법 **강력분(밀 원산지 나라이름)**
Example **강력분(밀 미국산 캐나다산)**

사용된 원료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배합비가 **강력분 49%**, 물 23%, 마가린 8%, 설탕 7%인 소보로빵의 경우 표시 대상은 강력분과 마가린이 된다. 물은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 방법 **강력분(밀 원산지 나라이름)**
Example **강력분(밀 미국산 캐나다산)**

표시 방법 **마가린(원산지 나라이름)**
Example **마가린(국산)**

특정원료농산물의 이름을 제품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산을 사용했을 경우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하면 된다.

배합비가 **강력분 42%**, 물 25%, **참쌀 21%**, **깨 2%**인 깨찰빵의 경우 표시 대상은 강력분, 참쌀, 깨가 된다. 깨는 2%밖에 배합되지 않지만 제품이름에 들어간 중요 재료이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 **강력분(밀 원산지 국가명)**
Example **강력분(밀 미국산 캐나다산)**

표시 방법 **참쌀(원산지 국가명)**
Example **참쌀(국산)**

표시 방법 **깨(원산지 국가명)**
Example **깨(수입산)**

